『通文館志』의 刊行과 그 史料 檢證

安 秉 禧*

1. 머리말
2. 『通文館志』의 原刊과 重刊
3. 『通文館志』 記事의 檢證
4. 맺음말

1. 머리말

司譯院은 조선시대 외교의 실무를 관장하고 譯官을 양성하는 官署이다. 『通文館志』는 그 司譯院의 편람서인데, 17세기 70년대부터 18세기 30년대까지 漢學譯官으로 크게 활약한 金指南(1654(효종5)~1718(숙종44)), 慶門(1673(현종14)~1737(영조13))[1] 부자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이다. 서명이 司譯院志가 아닌 것은 그 책(권1, 官舍조)에 따르면 司譯院 대청의 題額이 通文館으로서, 역관들이 정식 명칭인 司譯院보다 별칭인 通文館을 선호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2] 이 책은 1720년(숙종46) 원간본이 나온 뒤로 1888년(고종 25)까지 내용을 차례로 추가하여 10여 차례나 중간되었다. 그리하여 司譯院과 우리나라 외교사 연구의 기본적인 史料로 인식되고 있다. 국어학 연구에서도 譯學書의 편찬과 간행을 알려주는 자료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중요한 책임에도 그 書誌에 대하여는 온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간행과 異本에 대한 것이 그러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일찍이 田川孝三(1953)에서 논의된 이후로, 金鍾圓(1965)와 鄭光(1992)로 상당히 구명된 것은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田川孝三(1953)은 최초로 그 문제를 다루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장 치밀하고 정확하게 논의한 업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광복 이전 서울에서 조사한 기록에만 의지한 글이므로 실책의 조사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 점이다. 특히 田川교수는 광복 직전에 『通文館志』와 다른 譯學書의 책판을 발견한 장본인이며,[3] 1944년 朝鮮史編修會에 스스로도 참여하여 간행한 이 책의 영인본 표제지 안쪽에 영인 저본의

* 필자 : 서울대 명예교수

1) 이들 부자의 生年은 『譯科榜目』으로 일찍부터 알려졌으나 沒年은 아직도 미상으로 기술되는 일이 있다. 이미 오래 전에 金良洙(1985)로 그들의 묘비가 발견, 소개됨으로써 몰년의 절대 연도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밖에도 그들의 자세한 생애와 그 자손의 활약상도 그 글에 밝혀져 있다. 金교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2) 비슷한 일로 金慶門의 비문에서 1690년(숙종16) 譯科式年試에 장원으로 합격한 것을 '十八魁通文科'(金良洙 1985:113 각주 37 참조)라 기술한 사실을 들 수 있다.

3) 今西春秋(1958:53~4)에 따르면 田川 교수는 옛 司譯院 건물의 천정에서 그 책판을 발견하여 朝鮮史編修會로 옮겼다고 한다.

몇 장은 司譯院 樓板 곧 책판으로 수보하였다고 하므로[4] 책판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교가 없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鄭光(1992)에서 비로소 그 책판이 이용되어 이 책 간행이 논의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한두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다음으로 이 책에 대한 史料로서의 충분한 檢証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壬辰亂 이전의 기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安秉禧(1999)에서 崔世珍과 漢吏科에 대한 기사를 검증한 바가 있으나, 여전히 이 책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 일이 없지 않다. 이에 우리는 그 간행과 史料로서 갖는 문제점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2. 『通文館志』의 原刊과 重刊

우리나라 官版本에는 刊記가 없는 일이 흔하다. 그러한 책은 版式이나 간행에 관한 관련 자료, 內賜記 등으로 刊年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 『通文館志』도 간기가 없다. 그러나 권8(1778년(정조2)의 중간목판본부터는 권9) 紀年편의 마지막 연도와 『日省錄』 등의 간행 기사로써 간년의 절대 연대까지 밝힐 수 있는 利點을 이 책은 갖고 있다. 그러한 이점과 함께 실책의 형태를 조사하여 원간본과 중간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간본은 續附本[5] 권8 書籍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720년에 漢學역관 李先芳 등이 경비를 부담하여 8권 3책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田川孝三(1953)에 의하여 원간본은 현재 권6~8 1책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의 조사로도 달리 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 책은 紀年편의 마지막 연도인 1720년을 '今上四十六年'이라 하고 기사에 肅宗의 승하와 景宗의 즉위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은 현재 1758년(영조34)의 중간본 권1~6 2책과 함께 1부로 등록되어 있다. 권6이 중복된 것은 장책이 달라져서 중간본에서는 권6이 제2책으로 옮겨지고 새로 보충된 권9 紀年續編이 제3책에 매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간본인 3책 1부의 이 配補는 근래의 일이 아니다. 3책의 옛 소장인이 모두 '備邊司'(朱文長方印)인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소장인의 위치와 인묵의 빛깔이 제1, 2책은 같으나 원간본인 제3책이 다르고, 소장인 안에

4) 그 영인본에는 解題가 없으므로 수보된 책장이 밝혀져 있지 않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영인 저본은 복수의 중간본을 짜맞추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5) 續附本이라 함은 1778년의 중간본과 거기에 紀年편만 추가하여 간행된 그 이후의 중간본을 모두 가리킨다. 그 책에는 '續'이란 항목 아래 거의 全冊에 걸쳐 내용을 추가하고 목록의 권차 아래의 편명에 '續附'라 하여 『通文館志』의 원간본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정확하게는 原續本이라 하여야 하나 '續'이 붙은 것이 특징이므로 그냥 속부본이라 한다. 속부본은 권차도 달라져 있으므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책의 인용은 앞으로 이 책으로 한다. 혼란을 피하자는 뜻과 이 책이 영인본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유에 말미암은 것이다.

있는 '備局'이란 묵서도 제1, 2책에만 있다. 그러므로 원래는 원간본과 1758년의 중간본 2부가 비변사에 함께 소장되었으나 어느 시기에 현재와 같이 두 간본을 짝지은 1부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전래가 어떻든, 권6~8 1책의 이 원간본은 비록 缺本이지만 국내외에 오직 이 한 책뿐이므로 매우 귀중하다.

원간본이 나온 몇 달만인 바로 그 해에 이 책은 다시 간행되어 현재 奎章閣에 2부가 전한다. 그러므로 1720년의 또다른 간본이다. 활자와 版式은 원간본과 똑같으나, 권8 紀年편(속부본의 권9에 해당)을 크게 수정한 것이므로 1720년 수정본이라 부르기로 한다.[6] 수정된 내용은 肅宗 46년간의 모든 연도가 '今上'이라 된 것을 廟號에 따라 '肅宗大王'을 앞세워서 고치고 기사도 상당한 첨삭을 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차이는 田川孝三(1953: 43~56)에 제시된 對校表에 자세하다.[7] 이와 같이 동일한 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수정되어 다시 간행된 일은 달리 예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8] 그 이례적인 간행의 이유에 대하여 田川孝三(1953: 35~7)은 紀年편 연도를 예컨대 '仁祖大王十四年丙子, 仁祖大王十五年丁丑'과 같이 大字로 표기하고 이어 '崇禎九年, 崇禎十年崇德二年'과 같이 小字로 明, 淸의 순서로 중국 연호를 기록한 데서 찾았다. 이러한 연호의 사용은 당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淸나라에 알려지면 여간 큰 낭패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 연호의 주기를 아예 삭제하고 기사도 수정하여 수개월 안에 수정본이 나왔다는 것이 田川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在世중인 숙종을 '今上'이라 한 표기에도 빠른 수정본 간행의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在世의 왕을 '今上'이라 함은 당연하다. 이후의 모든 간본, 예컨대 1758년 중간본에서 英祖의 연도는 '今上元年, 今上二年' 등과 같이 기록된다. 문제는 표기의 방식이다. 원간본은 1720년을 '今/上四十六年庚子'(/는 행이 바뀜을 표시함)등과 같이 '今'을 앞 연도의 마지막 기사에 잇따라 쓰고 '上四十六年'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사진 1 참조). '今上'에서 '上'에만 平擡法을 적용한 것이다. '今上'은 '聖上, 大王, 先王' 등과 같이 전체가 擡頭法의 대상이다. '上, 王'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1758년 중간본 이후로는 재세한 왕의 연도가 행을 바꾸어 '今上元年' 등으로 표기되었다(사진 2 참조). 올바른 대두법의 사용이다. 그리하여 마침 숙종의 승하도 있어서 그 기사도 보충하고 '今上'을 묘호에 따라 '肅宗大王'으로 고쳐서 새로이 간행한 것으로 추

6) 수정된 紀年편의 마지막 연도의 기사에 肅宗의 승하와 景宗의 즉위가 나타나므로 원간본과 구별하여 田川孝三(1953: 34)와 같이 경종즉위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金鍾圓(1965: 193)이나 鄭光(1992: 128, 136)과 같이 경종원년판이라 하여서는 안된다. 1758년의 중간본 이후의 간본에는 1720년도의 기사에 새로 3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수정본이 1721년(경종원년)이 아니라 1720년인 경종즉위년에 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증거인 것이다.

7) 對校表에는 오자가 없지 않다. 저명한 것으로 원간본의 1720년 庚子의 기사에 있다고 한 '章文獻武敬明元孝大王昇遐 今上卽位 ○專差院正'의 2행은 삭제되어야 한다.

8) 약간의 내용 수정도 있으나 印刷가 나쁘다는 이유로 새로 간행된 일은 있다. 1573년(선조6)에 校書館에서 인출된 『內訓』이 그러한 예다. 安秉禧(1992: 103~4) 참조.

上四十四年戊戌 康熙五十七年○阿克敦等捧到皇太后訃勅及遺誥○遣礪原君柱察議呂必容陳慰進香書狀兼察 今

上四十五年己亥 康熙五十八年○內閣學士兼禮部侍郎德音等捧到上皇太后謚章皇后祔廟詔勅彩緞仍頒赦○遣礪山君枋等進賀謝恩○關白源吉宗新立請賀使遣洪致中黃璿李明彥等通信專差院正張文翰咨報禮部回咨內奉旨朝鮮國差往日本國使人回來時內中有明白曉事者揀選一人於進年貢同來朕問地方情形着該部行文朝鮮國 今

上四十六年庚子 康熙五十九年○專差院正申之淳同通信使回來倭學堂上金圖南前去咨報禮部

通文館志卷之八 終

사진 1. 1720년 원간본 8, 5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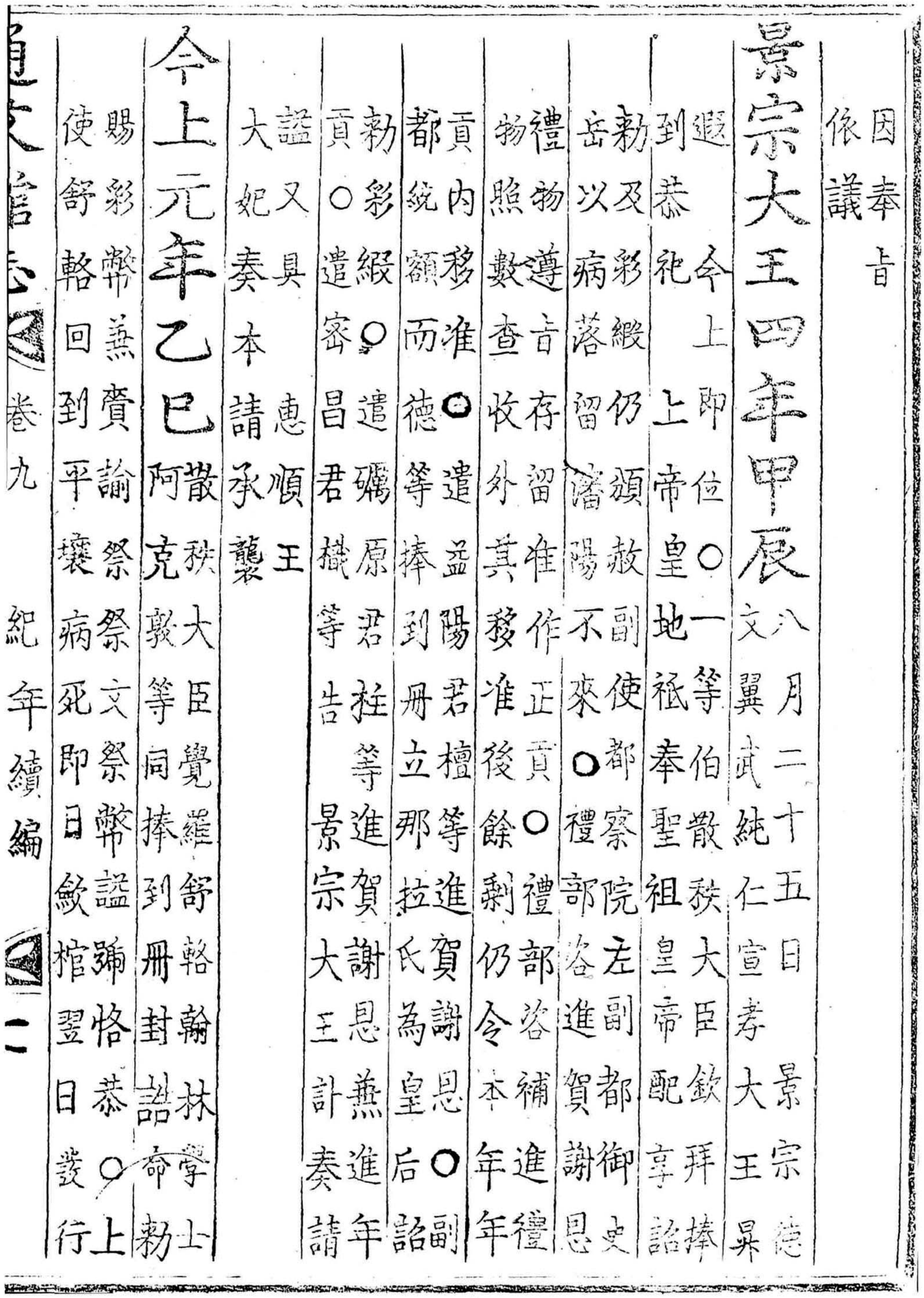
因奉旨
依議
景宗大王四年甲辰八月二十五日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昇
遐 今上即位○一等伯散秩大臣欽拜捧
到恭祀 上帝皇地祇奉聖祖皇帝配享詔
勅及彩緞仍頒赦副使都察院左副都御史
岳以病落留瀋陽不來○禮部咨進賀謝恩
禮物導言存留准作正貢○禮部咨補進禮
物照數查收外其移准後餘剩仍令本年年
貢內移准○遣益陽君檀等進賀謝恩○副
都統額而德等捧到冊立那拉氏為皇后詔
勅彩緞○遣礪原君梿等進賀謝恩進年
貢○遣密昌君樴等告 景宗大王訃奏請
謚又具 惠順王
大妃奏本請承襲
今上元年乙巳散秩大臣覺羅舒輅翰林學士阿克敦等同捧到冊封誥命勅
賜彩幣燕賚諭祭祭文祭幣謚號恪恭○上
使舒輅回到平壤病死即日斂棺翌日發行
通文館志 卷九 紀年續編 二

사진 2. 1758년 중간본 9, 7a

정된다. 그 보충된 기사에서 景宗의 즉위가 '上' 앞에 闕字 곧 空格을 두지 않고 '今上' 앞에 공격을 둔 표기(8, 59b9. 사진 3 참조)인 사실도 1758년 중간본 이후의 '今上'이란 재세한 왕의 표기에 대한 수정을 암시하고 있다.[9]

그런데 이 수정본이 8권 전책을 새로 조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원간본은 결본으로 전하는데, 권8은 수정본과 전혀 다르나 권6,7 2권은 수정본과 비교하여 내용은 물론이고 활자와 판식등 책의 형태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활자본에서 간혹 보는 補正, 곧 오자를 오려내고 교정한 글자가 찍힌 종이를 붙인 부분까지 일치한다. 권6의 보정을 대괄호로 묶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속부본은 권7로 권차가 다를 뿐이고 똑같은 장차에 보정과 같이 인쇄되었으므로 참조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赴京時〔武宗南巡公〕乘驛(6, 4b9)
以代兼〔金〕(6, 14b8)
又能〔詩酒〕(6, 24a10)

이러한 보정은 수정본 권1에도 상당히 나타난다. 그 앞쪽에서 약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漢學〔教授〕(序, 2b10)
東〔詩〕要覽 (書目, 2b1)
〔沿革〕(1, 1~3 판심)
卽〔漢吏〕科出身也 (1, 12b4)

이 수정본의 보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版心의 '沿革'이다. 다른 편명과 같이 이 沿革이란 편명도 中縫의 앞면, 다시 말하면 접힌 책장의 앞면에, 위 魚尾 아래에 나타나는데 보정의 오려낸 부분은 뒷면까지 걸쳐 있다. 이는 단순한 오자의 교정이 아니라, 권차인 '卷一' 등과 같이 판심 중앙, 곧 책정의 접힌 부분에 인쇄되었던 편명을 다른 편명과 같이 앞면으로 바로잡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재의 잘못은 원간본에서 일어나지만, 수정본이나 중간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1758년 중간본에서는 권차도 편명과 같이 중봉의 앞면으로 옮겨졌는데, 본문에서는 보정이 있으나 판심의 보정은 일체 없다(사진 2 참조). 요

9) '今上'에 대한 대두법의 잘못은 당시 司譯院이나 承文院의 관행이 아닌가 한다. '甲申(1704, 숙종30) 仲夏上浣'의 三譯總解序에서 1680년을 '今/上卽位之七年庚申'이라 하고 『攷事撮要』의 임진란 전 판에서 大明紀年의 宣祖 즉위를 '今(空格)上卽位'(上, 31b)라 한 것은 원간본의 '今/上四十六年庚子'와 똑같은 대두법이다. 『通文館志』의 1778년(정조2) 중간본에서 왕의 즉위를 원간본과 같이 '今(空格)上殿下卽位'와 같이 표기한 紀年편 기사(10, 61b)를 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 책의 연도는 1758년 중간본과 꼭같이 '今上元年' 등으로 기록되었다.

肅宗大王四十四年戊戌 阿克敦等賫捧到皇太后訃勅及遺誥○遣禮原君柱參議呂必容陳慰進香書狀兼察

肅宗大王四十五年己亥 內閣學士兼禮部侍郎德音等捧到上皇太后謚章皇后祔廟詔勅幷緞疋頒赦○遣禮山君枋等進賀謝恩○關白源吉宗新立請賀使遣洪致中黃璿李明彥等通信專差院正張文翰咨報禮部回咨內奉旨朝鮮國差往日本國使人回來時內中有明白曉事者揀選一人於進年貢同來朕問地方情形着該部行文朝鮮國

肅宗大王四十六年庚子 六月初八日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昇遐 今上即位○專差院正申之淳同通信使回來倭學堂上金圖南前去咨報禮部回咨內將來咨轉奏奉旨交與太學士奏內閣受出將禮部為

사진 3. 1720년 수정본 8, 59b

컨대 이러한 보정과 앞에서 말한 책 형태의 일치로 미루어서 수정본은 원간본에서 내용이 수정된 권8만 새로 조판하여 원간본의 그 부분과 바꾸어 장책한 것으로 생각된다. 권8이 수정되기 전에 일부 장책된 것이 현재의 원간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번 印出하고서 여러 달 동안 補版, 곧 조판된 상태로 판이 보존되다가 다시 인출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활자본의 인쇄 과정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에 하나 보판이 되었다면 수정본의 보정은 조판에서 쉽게 교정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원간본과 수정본 권6의 똑같은 보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본에는 원간본에 없는 보정이 오직 하나 있다. 곧 수정본에서는 보정이 되었고 속부본에서 그에 따라 간행되었으나, 원간본은 대조한 바와 같이 보정이 되지 않았다(사진 4 참조).

雖以〔秩高任用者〕(6, 21a10) - 雖以趙同樞東立

이 구절은 원간본대로라면 결벽할 정도로 청렴한 崔貞碔이, 역적 李馨長이 권세를 부릴 적에도 같은 역관으로 同知中樞府事까지 오른 趙東立과는 달리 역적에게 전혀 빌붙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수정본에서는 보정으로 趙東立이란 특정인 대신에 品秩 곧 품계가 높은 벼슬아치로 바꾸어 그런 벼슬아치와 달리 빌붙었다는 기롱의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고쳤다. 원간본 기사는 崔의 청렴을 드러내기 위하여 人物편에도 수록된 뛰어난 역관 趙東立(9, 22)을 결과적으로 흠낸 것이므로 수정본을 간행하면서 막연히 일반의 고관으로 수정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혹 우연의 실수로 원간본의 이 부분이 보정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실수는 극히 드물지만 복본인 활자본『楞嚴經諺解』의 교정에서 우리는 본 적이 있다. 그런데 日本의 內閣文庫에는 수정본을 필사한 책 5부가 소장되어 있으나 모두 보정된 내용과 같다.[10] 그러므로 원간본이 장책될 때에는 이 구절의 문제가 눈에 띄지 않다가 수정본을 내면서, 혹은 원간본의 장책 직후에 발견되어 보정되었다고 생각된다.[11]

원간본과 그 수정본에 이은 중간본은 1758년(영조34)의 활자본이다. 활자가 똑같은 戊申字일 뿐아니라 판식등이 대체로 같은 책이다. 다만 판심에서 속부본과 같이 위 象鼻의 서명과 아래 象鼻의 장차가 大字로 바뀌고 中縫의 권차도 편명과 같이 앞면으로 옮겨지며, 魚尾가 黑魚尾에서 二葉花紋魚尾로 바뀐 차이가 있다.[12] 본문의 내용도 수정본과 똑같아서 '秩

10) 그 필사본의 내용은 菅野裕臣 교수의 조사로 확인되었다. 바쁜 가운데도 필자의 무리한 부탁으로 일부러 실사하여 주신 교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11) 金鍾圓(1965: 188~9)와 鄭光(1992: 135)에서는 수정본에는 1708년부터 1720년까지의 기사 내용이 전책의 모든 항목에 증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증보된 내용은 원간본에서도 나타난다. 1708년에 책이 일단 편찬되고 서문까지 붙였으나 1720년에 간행할 때까지 수정, 보완하는 일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항목의 증보는 1차 완성의 원고본을 기준으로 하여 말할 수 있지만, 원간본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원간본과 수정본은 紀年편을 제외한 권6, 7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직 趙東立과 관련된 보정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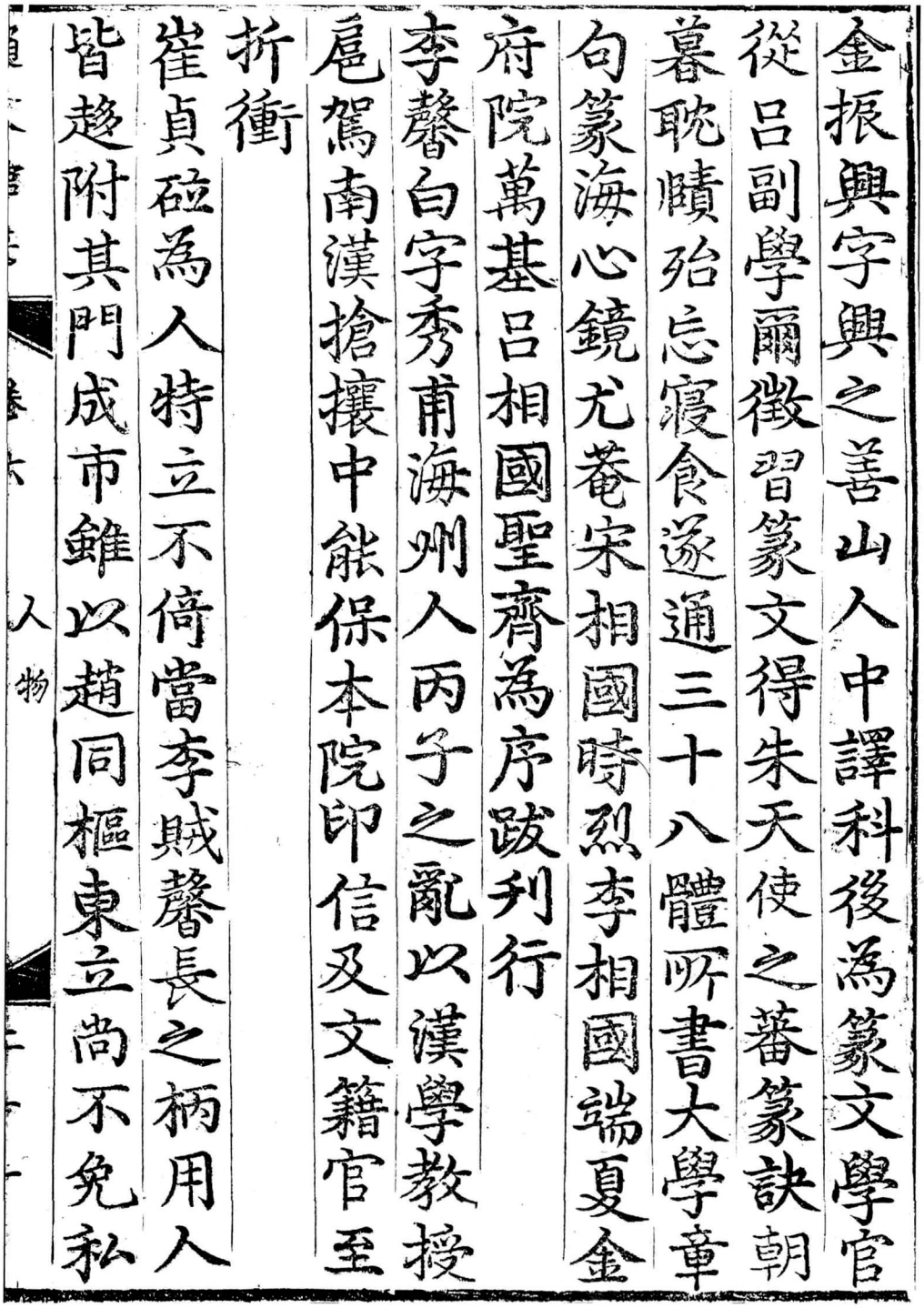

金振興字興之善山人中譯科後為篆文學官從呂副學爾徵習篆文得朱天使之蕃篆訣朝暮耽賾殆忘寢食遂通三十八體所書大學章句篆海心鏡尤菴宋相國時烈李相國端夏金府院萬基呂相國聖齊為序跋刊行

李馨白字秀甫海州人丙子之亂以漢學教授扈駕南漢搶攘中能保本院印信及文籍官至折衝

崔貞礎為人特立不倚當李賊馨長之柄用人皆趨附其門成市雖以趙同樞東立尚不免私

사진 4. 1720년 원간본 6, 21a

高任用者'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권6 人物편에 金是瑜, 金慶門, 李樞 세 사람이 추가되고, 새로 권9에 紀年續編을 두어 1721년(경종1)부터 1758년까지 38년간의 기사를 더 실었다. 권8의 마지막 연도인 1720년의 기사에도 앞(위 각주 6) 참조)에 말한 3조항의 추가가 있어서 수정본의 간행이 1721년일 수 없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1758년의 활자본에 이은 중간본은 위에서 속부본이라 한 1778년(정조2)의 목판본 10권 4책이다. 李湛의 「重刊通文館志序」에 의하면 司譯院都提調인 栢谷 金相國의 명령[13]으로 紀年편 기사의 추가뿐 아니라 다른 本文도 시대에 맞추어 '續'편을 각 조항에 보완하고 책의 체재도 바로잡아 간행된 책이다. 그러나 版式과 行格은 1758년의 활자본을 답습하였다. 그런데 이 이후의 모든 중간본은 이때의 책판과 중간할 때마다 추가된 紀年편 기사의 補板으로 인출된다. 이들 책판은 고려대博物館에 상당수 남아있어서 그 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1781년 이후의 중간본은 鄭光(1992: 129)와 같이 일종의 後刷本이고, 田川孝三(1953: 39)의 복간본이나 金鍾圓(1965: 191)의 개간본이 아니다. 그만큼 속부본은 단순한 중간본 이상의 책이다.

내용의 보완에 대하여는 이미 田川孝三(1953)에서 「重刊通文館志序」를 인용하여 밝힌 바와 같다. 곧 원간본이 간행된 뒤로 60여년 사이에 달라진 외교 事例와 官制가 많으므로, 그것을 원간본의 해당 조항 아래에 '續'자를 쓰고 추가하였는데, 앞선 간본이 9편이었으나 紀年續編이 더하여져 10편이 되고[14] 116조항도 거의 절반인 53조항에 續편을 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가된 부분에는 '續'자를 앞세워서 典例의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여 책의 이용에 혼란을 없게 한 특징도 있다. 이밖에 引用書目에 『續大典』 이하 세 책과 권7 人

12) 상비와 중봉에 서명, 권차, 편명, 장차를 표시한 이 판심은 『通文館志』의 한 특징이다. 이러한 판식은 그 책 편찬자가 중국본의 판식을 참고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서지학 특히 형태서지학에서 주목할 일이다.

13) 栢谷이란 호를 가진 당대 정승인 '金相國'의 신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司譯院都提調의 栢谷은 이 책뿐 아니라 1774년(영조50) 가을의 「重刊三譯總解序」와 1781년(정조5)의 「重刊捷解新語序」 등 譯學書의 서문에도 나타난다. 鄭允容의 「領議政金公尙喆謚狀」(『經山集』 권19)에서 癸巳年(1773)에 左議政으로 司譯院都提調를 겸하였다고 한 金尙喆이 영조 말부터 정조 초까지 계속 정승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그가 알려진 華西 이외에 栢谷이란 호를 가졌음에 틀림없다. 제조가 된 지 5년이라 한 1778년, 10년이라 한 1781년이 모두 도제조를 겸한 1773년부터 기산하여 맞는다. 『譯語類解補』의 金弘喆 발문(乙未(1775)夏)의 '지금 도제조 金相國'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책 편찬을 명령한 '蘇山 金相國'을 같은 사람으로 본 견해(정광 · 윤세영 1998: 118, 특히 각주 64)는 따르지 않는다. 문맥으로 보아도 책 편찬을 명령한 사람과 간행을 명령한 사람은 성은 같으나 이름과 호가 다른 金相國이다. 『正祖實錄』에는 영의정 金尙喆이 중국 가는 使行의 문제점을 왕께 아뢴 기사(2년 9월 丙辰)도 있다. 이에 이들 책의 '栢谷 金相國, 今都提擧金相國'은 金尙喆로 추정한다.

14) 중간서의 '編'은 뒤에 말할 편과 다르고 책에 표시된 卷次의 권으로 이해된다. 앞선 간본의 9편은 1758년 중간본의 9권, 10편은 속부본의 10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紀年續編이 추가되어 10권이 되었다는 서문의 기술은 정확하지 않다. 그 추가는 이미 1758년 간본에 있었는데, 속부본에서는 영조 35년부터 정조 2년까지의 20년간 기사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1권이 많아진 것은 뒤에 말할 권1의 分卷에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1758년 간본의 권9 기년속편이 그 분권으로 권10 기년속편이 되고 20여장의 기사만 늘어난 것이다.

物편에 玄德潤, 崔壽溟, 洪舜明 세 사람이 추가되었다. 1758년 중간본과 같이 人物편의 추가는 '續'이란 표시가 없다. 그런데 속부본에서 원간본에 있는 金慶門의 「通文館志序」의 연기를 '戊子(1708, 숙종34)陽月'에서 '庚子(1720)陽月'로 고친 것은 田川孝三(1953: 32)와 같이 분명한 잘못이다. 이 수정은 鄭光(1992: 132)에 의하면 책판에서 '庚'자를 埋木으로 고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때 속부본의 印面에서 '庚'자가 다른 글자보다 진하게 된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이 수정은 속부본의 간행 과정에서 서문의 연기가 원간보다 12년이나 앞선 것이 오자라 생각하여 이루어졌으나, 원간본 원고의 완성과 서문의 연기가 그 刊年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과한 잘못인 것이다. 앞에서 수정본과는 달리 원간본 紀年편의 마지막 해인 1720년 기사에는 6월 8일에 있은 숙종의 승하가 없다. 10월인 '陽月'을 그대로 두어 원간본이 4개월 전에 있은 왕의 승하에 대한 기사를 빠뜨린 책으로 되게 하였으니 그것은 너무나 분명히 잘못된 수정이다. 속부본에 나온 玉의 티가 아닐 수 없다.

책의 체재에 나타난 차이도 이미 앞선 논문에서 分卷과 目錄으로써 언급되었다. 유감스러운 일은 그 차이를 책 체재의 조정과 관련시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분권은 권1에 수록된 沿革과 勸奬의 2편을 권1, 2로 나눈 일이다. 그런데 원간본에서 행한 분권은 각 편의 분량이 보이는 차이로 고르게 되지 못하였다. 事大, 交隣 2편은 분량이 많아서 각각 上,下로 분권이 되었으나 故事, 率屬, 什物, 書籍 4편은 모두 9장(속부본에서도 10장)이어서 1권으로 합쳐져 있다. 문제의 권1에도 모두 26장인 2편을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故事편등과는 달리 본문에서 편 제목을 '沿革第一, 勸奬第二'와 같이 표시하였다. 속부본에서는 모두 4장의 추가가 있어서 권1, 2로 나누어 책 분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2편이 갖는 내용의 중요성도 드러낸 것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분권의 사실만 지적하고 그것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원간본을 비롯한 활자본과 속부본은 事大下, 交隣上의 目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실도 田川孝三(1953: 38)과 金鍾圓(1965: 193)에서 이미 지적만 되었을 뿐이다. 곧 원간본의 '鴨江迎勅(見官禮/儀附), 正殿接見儀(茶禮/附)'(이상 권3 事大下 목록. 단, 괄호 안은 쌍행 협주인데 /은 행이 바뀜을 표시)등이 속부본에서는 '鴨綠江迎勅(見官禮儀附), 仁政殿接見儀(茶禮儀附)'(이상 권4 事大下 목록)등으로 수정된 예다. 이러한 목록에 보이는 조항 제목은 본문에 나타나는 조항 제목과 일치하는 속부본이 옳고 본문의 그것과 다른 원간본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간본의 잘못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록을 고친 것이다. 원간본을 비롯한 활자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조판에서는 조항 제목을 1행 최고 7자로[15] 하여 2단으로 목록을 짰기 때문이다. 속부본 목록과

15) 유일한 예외로 '進(上物件看品式公/貿易看品式附)'(권4 交隣上 목록)은 1행 8자이다. 속부본은 '進上物件看品式(公貿易看品式附)'(권5 交隣上 목록)이라 하여 본제목과 협주까지 본문과 일치시켰다. 그

같은 본문 제목에서 1자를 빼거나 1자가 적은 동의어로 바꾸어 '鴨江, 正殿'으로 되고, 그 아래 각주와 같이 大字인 '進上物件看品式'에서 '上' 이하를 협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속부본의 목록도 2단으로 되었으나, 활자본에서 2단에 맞추기 위하여 바꾼 제목은 2단이 아닌 1단 1행으로 하여 본문 제목에 일치시켜 수록하였다. 책 체재에서 목록이 목록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의 정확한 검색을 위한 존재라는 인식의 발로인 것이다.

셋째로 紀年편에서 연도를 기사와 분리시켜 별행으로 한 것도 다른 점이다. 원간본을 비롯한 앞선 활자본은 『攷事撮要』의 大明紀年과 같이 연도 아래에 잇따라 쌍행으로 기사를 실어서 그해 첫 기사의 검색에 약간의 불편이 있었다. 속부본은 연도와 기사를 별행으로 하여 그 불편을 지양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왕이 바뀐 뒤의 중간본에서 先王의 연도만 고쳐서 앞선 책판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1778년의 속부본 책판은 1777년(정조1)의 연도 '今上元年丁酉'(10, 63b)등을 埋木으로써 '正宗大王元年丁酉' 등으로 쉽게 수정하여 1802년(순조2) 이후의 중간본에 사용되었다. 실지로 그러한 책판의 수정은 고려대박물관 소장의 책판에서 正祖부터 哲宗의 연도로 확인된다.[16] 속부본의 체재가 활자본과 같다면, 연도 표시에 '大王'이란 2자가 더 있으므로 앞선 시기의 책판을 수정하여 사용하려면 기사를 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연도의 별행은 이러한 책판 이용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활자본에서 왕의 즉위를 '今上卽位'라 한 기사를 속부본이 字數를 늘리어 '今上殿下卽位'라 한 것도 승하한 뒤에 묘호로 바꾸어 '正宗大王卽位'로 고칠 경우의 자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지로 '卽位' 앞의 4자는 埋木으로 책판에 수정되어 있다. 결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없다. '今上'이라 지칭된 왕의 사후에도 그 책판의 이용을 내다본 수정인 것이다.

그러나 속부본에서도 체재의 잘못이 있다. 권9, 10의 尾題 뒤에 '終'이란 협주가 그것이다. 이 협주는 여러 권으로 된 책의 마지막 권차에만 나타나 그것으로 1부의 책이 끝난 것임을 말한다.[17] 여러 권의 책인데도 그 마지막 권차의 尾題에 '終'이 없으면, 일단 缺本으로 의심할 근거가 된다. 반대로 마지막 권차 앞의 미제에도 '終'이 있으면 그 마지막 권차가 없어도 결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속부본 권9의 미제는 앞의 권차와 같이 협주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분명한 잘못은 1758년의 중간본에서 원간본 권8 미제의 협주를 그대로 두고서 추가된 권9 미제에도 협주 '終'을 둔 일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런데 본문의 협주는 활자본과 속부본이 모두 '(公貿易/看品附)'라 하여 '式'이 탈락되어 있다. 속부본 목록이 본문과 다른 유일한 예다.

16) 책판의 실사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최호철 교수의 소개로 박물관 최관식 관장과 배성환 학예사의 배려로 가능하였다. 귀중한 문화재를 조사하도록 협력하여 준 세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17)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蒙學書인 『蒙語老乞大』(8권)와 『捷解蒙語』(4권)는 각권의 미제마다 '終'이란 주기를 달았다. 각권 단위로 학습한 일과 연관되었을지 모르나 다른 譯學書에는 미제조차 없는 것도 있다. 이들은 모두 예외적인 일이다.

3년 뒤의 1781년 중간본부터는 마지막 권차의 협주까지 지우고 간행되었다. 이는 紀年편의 증보로 계속하여 책을 간행하려는 배려로 이해된다. 그뒤의 모든 간본은 예외없이 이 관례가 지켜져 마지막 권차의 미제에도 협주는 나타나지 않는다.[18]

이상과 같이 속부본은 잘못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과 체재가 완비된 책이다. 그리하여 이후의 중간본은 권10 紀年續編 이하에 중간할 연도까지의 기사를 추가한 것만 다르다. 다시 말하면 권1~9는 그때 책판으로 인출하고, 권10 이하도 추가가 없는 부분은 그전 책판을 인출하되 기사의 추가 부분은 새로 刻板하여 인출한 것이다.

그전 책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인출하나 埋木에 의한 책판 수정은 당연히 있다. 첫째 앞에서 체재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도와 기사에서 '今上'이라 지칭되던 왕이 승하하면 묘호로 바꾸게 된다. 예컨대 正祖가 재세한 때의 책에서 '今上元年云云(10, 63b), 今(空格)上殿下(10, 61b)'라 한 것은 純祖 이후의 책에서는 당시의 묘호에 따라 '正宗大王元年云云, (空格)正宗大王'으로 수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앞 중간본 紀年續編의 마지막 기사가 책판에 꽉 차고 책장 뒷면 10행에 尾題가 있으면, 埋木으로써 미제를 연도로 수정한다. 1795년(정조19) 중간본은 1781년(정조5) 중간본의 마지막 책장 미제를 매목으로 '今上六年壬寅'(10, 72b10)이라 수정한 책판을 사용한 것이 그 예인 것이다. 그러나 앞 중간본의 마지막 기사가 책장 뒷면 9행까지 채워지지 않은 책판은 폐기되고[19] 새 책판으로 대체된다. 여기 폐기라고 하였으나 책판 전체가 못쓰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 책판은 양면으로 판각되므로 한 면이 못쓰게 되어도 다른 면은 여전히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폐기된 책판은 정확히 말하면 매목으로 수정하여 쓰지 못하는 한 면에 국한하여야 된다. 폐기된 책판도 다른 한 면의 이용 가치로 여전히 보존된 이유인 것이다. 그러한 책판이 鄭光(1992: 137~8)에 의하면 고려대박물관에는 2장 보존되어 있다. D-1741(11, 52 및 56)과 D-1744(11, 48 및 52)[20]의 각기 둘째 면이 그러하다. 전자는 哲宗 7년의 마지막 기사 1행과 미제, 후자는 책장 뒷면 7행까지 哲宗 3년 기사와 미제가 판각되어 있다. 매목에 의한 수정이 전자는 전혀 불가능하고, 후자는 뒷면 7행의 수정도 있으므로 4행이나 매목으로 수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책판으로 대체되고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판은 각기 첫째 면이 哲宗의 승하 이후에도 연도 1행의 수정으로 계속 이용되어 보존된 것이다. 또 권1 첫머리에 있는 권10

18) 이유는 어떻든, 마지막 권차의 미제 뒤에 협주 '終'을 없앤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써 이 책 1781년과 그 이후 중간본의 한 특징이다.

19) 필자의 책판 조사는 남아 있는 것 중의 극히 일부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책장 뒷면 9행까지 채워지지 않은 책판이 새 책판으로 된다고 한 것은 세밀한 조사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3행 정도를 잇따른 매목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뒷날의 세밀한 책판 조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0) 鄭光(1992: 138)에서는 D-1744(권11, 48 및 67)의 둘째 면을 괄호 안 주석과 같이 책판의 장차에 따라 권11, 67이라 하였다. 그러나 판각된 본문 곧 D-1744의 둘째 면은 실책의 대조로써 권11, 52임이 확인된다. 판심 장차를 매목으로 '六十七'로 수정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엉뚱한 잘못인데, 그것을 그대로 믿은 鄭교수의 주석은 따르지 않는다.

이하의 目錄 책판도 수정되어야 하나, 序와 뒤 引用書目의 경우와 같이 그전 책판이 그대로 인출되어 추가된 紀年續編의 실제 연도가 반영되지 못한 일도 있다. 田川孝三(1953: 40~1)에 의하면 1781년과 1795년의 중간본은 속부본 목록 그대로이고, 1862년(철종13) 이후의 중간본은 권11 목록이 '自辛酉(1801, 순조1) 至壬子(1852) 凡五十二年'이라 되어 있으며, 1888년(고종25) 중간본에는 권12가 새로 추가되었으나 목록은 1862년의 책 그대로여서 권12가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중간본의 권10 이하 목록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중간본으로 우리가 조사한 책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간년은 紀年續編의 마지막 연도로 추정된 것이다.

1781년 辛丑(정조5), 10권 4책.
1795년 乙卯(정조19), 10권 4책.
1802년 壬戌(순조2), 11권 4책(권11은 순조1, 2년 2년간 기사 4장임).
1862년 壬戌(철종13), 11권 5책.[21]
1874년 申戌(고종11), 11권 5책.
1881년 辛巳(고종18), 11권 5책.
1888년 戊子(고종25), 12권 6책.

이밖에 田川孝三(1953: 40)에 의하면 1862년 이후의 중간본 권11 목록에 따라 1852년 壬子(철종3), 그밖에 『日省錄』과 實錄의 기록으로 1820년 庚辰(순조20), 1842년 壬寅(헌종8), 1856년 丙寅(철종7)의 중간본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852년과 1856년의 중간은 앞에 말한 한 면이 폐기된 책판(D-1744 및 D-1741)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D-1744는 1852년, D-1741은 1856년 중간 때의 보판인데, 전자의 둘째 면은 후자의 첫째 면, 후자의 둘째 면은 뒤의 중간에서 다른 책판으로 대체되어 폐기된 것이다. 金鍾圓(1965: 191)에 의하면 『日省錄』과 『承政院日記』등으로 1875년 乙亥(고종12)와 1883년 癸未(고종20)의 중간본도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속부본 이후의 중간본은 紀年續編에 추가된 기사만 새로 책판을 만들어서 그 앞의 책판과 함께 인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중간의 시차가 짧게는 3년, 길어도 20여년인 사실로써 당시 『通文館志』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책인가를 분명히 알게 한다. 또 開化期에 들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격변하여 종래의 외교관례가 소용없게 되어 1888년의

21) 金鍾圓(1965: 191 및 194)에 의하면 1861년의 중간본이 奎章閣(신청번호:奎795)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책에는 1862년 곧 철종 13년의 기사가 있는 권11의 낙장(66, 67 2장)이 있다. 같은 책인 奎章閣의 상백문고와 藏書閣 소장인 1862년 중간본과의 대조로써 金鍾圓 교수의 설명은 따르지 않는다.

중간본으로 마지막 간행이 된 것도 확인시켜 준다.

20세기에 들면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이 책은 다시 주목된다. 1901년(光武11)에 京城珍書刊行會에서 1888년 중간본, 1913년에 朝鮮古書刊行會에서 1862년 중간본을 활판으로 복간하고, 1944년에 朝鮮史編修會에서 史料叢刊 제21집으로 1888년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몇 장은 책판으로 수보하여 축소 영인한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이 영인본은 인쇄가 선명하여 1973년 景仁文化社에서 그것을 다시 영인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1944년 영인본에는 아예 해제가 없고,[22] 1973년 영인본에는 해제가 있으나 미흡할 뿐 아니라 영인 저본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영인본으로 따져볼 때, 권9 尾題에 '終'이 있고 目錄의 권10 내용, 그리고 권11 이하의 목록이 없는 점으로 권1~9는 1778년의 속부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권10도 '今(空格)上殿下(61b3), 聖和王大妃(61b5)'로 미루어서 장61까지는 1778년 책이거나 1781년의 중간본이 저본으로 되었다고 추측된다. 埋木에 의한 수정으로 전자는 1802년(순조2) 중간본부터 '正宗大王', 후자는 1795년 중간본부터 '聖哲王大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저본은 '今上'이 묘호로 수정된 뒤의 중간본이다. 그러나 紀年편을 제외하면, 다시 말하면 권1~8은 1888년 중간본까지 모두 속부본이거나 그 후쇄본이므로 국어학계의 영인본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3. 『通文館志』 記事의 檢證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은 국어학계에서도 司譯院과 譯學書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史料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史料의 검증이 없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崔世珍과 관련하여 이 책이 그를 譯科에 합격한 譯官으로 다루는 일(7, 3b)이라든지 科擧조의 협주에서 그가 漢吏科 출신이라 한 일(2, 2a)은 出典이라 한 문헌에 그것이 없을 뿐 아니라 관계된 다른 문헌으로 미루어서 신빙성이 없는 기사인 것이다(安秉禧 1999 참조). 이들 기사는 이 책 편찬자로 대표되는 18세기 초의 역관들이 崔世珍을 그들과 같은 신분으로 인식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 인식의 근거는 이들 기사의 出典이라 한 『稗官雜記』나 『經國大典』이 아니다. 거기에는 위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필자는 그들이 자주 이용한 『四聲通解』의 서문에서 최세진이 말한 '自學箕裘' 곧 스스로 家業을 공부하였다는 구절에 근거를 둔 것으로 추측한다. 실지로 이 구절은 人物편의 최세진조에 그대로 인용

22) 필자가 1973년 가을부터 약 1년반동안 日本에서 國語史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에 田川孝三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때 국립중앙도서관의 이 책 원간본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 그 말씀에서 받은 인상은 田川孝三(1953)이 1944년 영인본의 해제 집필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쓴 논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교수가 해방 직전까지 조선사편수회에 재직한 사실로 미루어 그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되어 있다. 역관의 아들로서 『四聲通解』,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書 등의 편찬을 가업을 이어받은 일이라 스스로 말하였다면, 18세기 당시의 신분제도를 고려하여 그는 중국어 역관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초의 신분제도는 18세기와 같이 극도로 폐쇄적인 것은 아니다. 淸顯職 文臣의 가계가 아니므로 출세에 많은 제약과 견제가 있었으나 그는 文科 출신의 당당한 文臣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될 기회가 있겠지만, 위 기사만으로도 이 책의 이용에는 상당한 조심성이 요망된다. 더욱이 책 첫머리의 기사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沿革편 官制조에서 고려 忠烈王 2년 곧 1276년에 비로소 通文館을 설치하여 漢語 곧 중국어를 익히게 하였는데 恭讓王 3년에 漢文都監이라 고치고 조선초에 처음으로 司譯院을 설치하여 여러 곳의 언어를 통역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는 기사(1, 1a)가 그것이다. 元永煥(1977: 258~9)에서는 『高麗史』 권76 「百官志」1의 通文館조를 인용하여 司譯院의 설치는 이미 고려말에 되었다고 수정한 일이 있다.[23] 이와 같이 壬辰亂 이전의 이 책 기사에는 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문제를 人物편과 故事편의 두어 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人物편의 曺伸조(7, 4a)를 보기로 한다. 그는 역관이 아니다. 서얼이지만 뛰어난 詩才로 成宗의 인정을 받고 雜織에 등용되어 日本과 中國의 使行을 수행하고 司譯院正을 역임한 사실은 1518년(중종13) 姜渾이 『二倫行實圖』 서문에서 영남관찰사 金安國이 前司譯院正 曺伸에게 그 책 편찬을 위촉하였다고 한 내용으로 분명하다. 여기에서 이 책 人物편에는 뛰어난 原任譯官뿐 아니라 原任司譯院正도 수록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曺伸을 梅溪 곧 曺偉의 庶兄이라 한 기사이다. 출전은 『松溪漫錄』과 『稗官雜記』라고 되어 있다. 『大東野乘』에 수록된 두 책을 찾아보면, 전자(권하)는 "梅溪先生之庶弟也 博學强記 尤長於詩"로 시작되어 이 책 기사 앞부분과 같은 내용이나 '庶弟'라 한 것만 다르고, 후자(권2)는 安南國使와 詩를 주고 받은 내용으로 기사 뒷부분과 일치한다. 출전에 비추어서 기사의 庶兄은 큰 잘못이다. 그밖에도 曺偉의 문집 『梅溪集』의 年譜나 詩題를 보면 '庶弟伸, 庶弟叔奮, 庶弟適庵' (여기 叔奮은 그의 字, 適庵은 그의 號)이란 기록이 있고, 부록의 「先生墓表」는 '庶弟適庵伸撰'이라 되어 있다. 따라서 曺偉의 庶兄이란 기사는 庶弟라야 한다. 오늘날의 안목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잘못으로 보일지 모르나, 조선시대 嫡庶의 차별과 兄弟 서열의 중시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잘못인 것이다.

다음으로 曺偉조와 崔世珍조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 人物편의 수록 순서는 나이와 활동 연대의 선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崔世珍은 그의 誌石에 의하면 1468년(세조14)에 출생하였는데, 曺伸은 成化己亥 곧 1479년(성종10)에 通信使 申叔舟를 따라 일본에 갔다고 한다. 그러므로 曺伸은 나이로 보나 使行을 따라 간 일로 보나 崔世珍보다 10여년 앞서 출생

23) 이 사실은 小倉進平(1940: 3)에서 똑같은 사료로써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하여 활동한 인물이다. 당연히 曺伸이 최세진보다 앞에 수록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御前文臣通事와 관련된 故事편의 기사(8, 2b~3a)가 문제다. 기사에 의하면 옛날에는 어전문신통사가 없었으나 임진란 중에 宣祖가 명나라의 사신을 접견할 때 譯官通事 秦聖男을 시켜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황제에게 잘 주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감히 어찌 '贊襄'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런데 진성남이 본래 중국어를 잘했으나 갑자기 사신의 대답을 통역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 있던 李德馨이 곧 '贊襄' 두 글자가 성취되도록 힘쓰겠다는 뜻이라고 아뢰었는데, 선조가 기특이 여겨 이로부터 명나라 사신이 올 때에는 중국어를 하는 문신으로 御前通事를 實差와 預差 곧 정식과 후보로 차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출전이라 한 『象胥故事』를 오늘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원전과 대조하지 못한다. 그러나 옛날부터 文臣이 어전통사로 차출된 일은 최세진과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1505년(연산12) 3월의 參議 崔瀣가 있고, 1536년(중종31) 12월에 이듬해 3월에 올 명나라 사신을 대비하여 어전문신통사의 실차와 예차로 최세진과 尹漑가 논의된 사실(安秉禧 1999: 57~8)이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그러한 사실만 보아도 옛날에 어전문신통사가 없었다는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겠다.

선조가 임진란 이후에 비로소 어전문신통사를 두도록 하였다는 그 내용은 더욱 문제다. 선조 초에 柳希春이 經筵에서 어전통사를 담당할 文臣이 매우 적으니 나라에서 미리 길러야 함을 아뢴 기록이 그의 『眉巖日記草』(癸酉(1573, 선조6) 1월 12일자)에 나타난다. 그 근거로 世宗 때에는 申叔舟, 成三問 등을 요동에 귀양온 중국 명사에게 보내어 중국어와 吏文을 배우도록 한 일과 中宗 때에는 崔世珍, 尹漑 등이 중국어를 잘하여 중종이 권장하고 책임지게 한 前例를 들고, 지금은 金啓 한 사람뿐인데 東萊府使로 차출되어 承文院提調가 모두 안타까워함을 아뢰고, 이어서 金啓의 말로 注書 李濬이 어전문신통사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니 이런 사람을 書狀官이나 質正官으로 중국에 보내면 자연히 중국어에 익숙해지리라고 한 것이다.[24] 이 기록은 선조도 진작부터 어전문신통사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전문신통사와 관련된 故事편의 기사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

부수적인 일이지만 柳希春의 이 일기로써 우리는 최세진이 申叔舟, 成三問, 尹漑와 꼭같이 당당한 文臣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일기의 신빙성은, 최세진의 훈도를 받은 吏文學官 魚叔權과 유희춘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크다. 그 친분 관계는 유희춘의 일기에 나오는 魚叔權과 그의 『稗官雜記』에 관한 많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최초의 기록은 유희춘이 20년에 걸친 귀양에서 풀리고 成均館直講으로 임명되어 상경한 지 7일만에 어숙권이 찾아온 다음 내용이다.

---

24) 같은 기사가 『宣祖實錄』 6년 1월 癸巳(12일)조에도 실려 있다. 壬辰亂으로 史草가 없어져서 실록 편찬에 『眉巖日記草』가 기본자료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록에서는 承文院提調가 모두 안타까워하였다는 '率多嗟惜'을 '率多嗟誤'라 하여 전혀 다른 뜻으로 되었다. 전사할 때의 잘못이다.

吏文學官 어숙권이 내방하다. 곧 30년 옛 친구다. 기쁘기 이루 말할 수 없다(丁卯(1567, 명종22) 11월 5일)

매우 간단한 기록이나 30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20여년만에 만난 기쁨이 잘 드러난다. 30년 전이라면 유희춘의 스승인 金安國과 어숙권의 스승인 최세진이 모두 살아 있을 때다. 그들의 스승이 생존하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위의 이 기록만으로도 유희춘이 선조께 아뢴 중종 때의 어전문신통사 최세진의 말은 여간 큰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기의 5년 뒤부터는 『稗官雜記』에 대한 내용이 많다. 초고를 빌어서 베낄 뿐 아니라 '續集二卷'의 편찬에는 스스로 도움을 준 기록이 일기(壬申(1572. 선조5) 9월 21일, 9월 30일에서 甲戌(1574) 7월 24일까지)에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그 한 기록에는 어숙권에 대하여 서얼이라 仕路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사람됨이 신실하고 학문이 뛰어나다고 칭찬한 일기(甲戌 5월 24일)도 있다. 同榜으로 가까웠던 金安國과 최세진, 각기 제자로서 가까운 유희춘과 어숙권의 관계는 학문상으로 世交가 인정되는 친분이다. 그러한 유희춘이 최세진을 정승까지 지낸 尹根와 함께 중종 때의 문신통사로 중용되었다고 선조께 아뢴 일은 최세진이 文臣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通文館志』에서 최세진을 譯科 출신의 역관으로 다루거나 漢吏科 출신이라 한 기록은 결코 믿어서 안될 내용이다.

이상 人物편과 故事편의 임진란 이전 기사에서 이 책이 史料로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다른 기사까지 모두 신빙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진란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 기사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史料다. 일부 기사가 검증이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두 기사를 논의한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은 구성과 체재, 그리고 기술 내용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편찬자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司譯院의 沿革과 機構, 入屬과 科擧, 事大와 交隣의 儀式과 절차, 저명한 人物과 故事, 소유 재물을 기술한 다음 紀年편을 두어 丙子胡亂이 일어난 1636년(인조14)부터 책 간행 때까지의 外交상 주요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司譯院 편람서로서의 완벽한 편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는 책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우선 事大편과 交隣편의 分卷을 들 수 있다. 事大편 上은 우리나라 使行이 중국으로 갈 때, 下는 중국 使行이 우리나라로 올 때의 의식 절차가 기술되나, 交隣편 上은 일본 使行이 올 때, 下는 우리나라 使行이 일본으로 갈 때의 의식 절차가 기술된 내용이다. 당시 중국 중심의 외교 관계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잘 반영한 체재인 것이다.

다음으로 司譯院의 四學 곧 漢蒙倭淸學의 序列과 比重에 대한 기술을 들 수 있다. 위 서열은 淸나라와의 관계로 1765년(영조41)에 淸學이 蒙學의 위로 가서 漢淸蒙倭學으로 되는데, 이 책의 官制, 官舍, 什物, 書籍 등 모든 기술이 그에 따르고 있다. 원간본에서는 淸學이 마지막에서 다루어졌으나 속부본의 續편에서는 淸學이 漢學에 바로 계속되어 다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四學 상호간의 比重에 대하여 이 책은 漢學의 절대적 우위를 잘 보여준다. 事大交鄰을 생각하여 漢學이 중심에 있는 것은 짐작되지만, 내용을 보면 중심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다. 먼저 譯科 합격의 정원이 漢學은 13명이고 나머지 三學은 각각 2명으로서, 漢學이 三學 정원을 합친 숫자보다도 많다. 거기에 壯元은 漢學으로 하고 나머지는 分數에 따라 차례로 합격시켜서, 1등에게는 從7品, 2등에게는 從八品, 3등에게는 從九品의 品階를 주는데, 取才 등으로 이미 품계가 있으면 一階씩 올려주도록 하였다.[25] 이러한 제도로 말미암아 漢學 출신의 역관은 다른 三學 출신보다 앞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빈번한 使行의 내왕으로 漢學의 역관은 공을 세워 加資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역관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므로 司譯院이 四學을 고루 교육하고 장려한 기관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漢學을 우대하고 그 출신의 역관을 핵심으로 하여 운영된 것임을 이 책은 극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漢學 출신의 역관은 20대 중반에 司譯院의 책임자인 正이 되기도 하였다. 金指南의 여섯째 아들인 纘門(1690(숙종16)~1714(숙종40))은 1710년에 漢學으로 譯科壯元이 되어 從七品인 直長에 叙用되고, 해마다 主簿, 僉正으로 승진하여 24살인 1713년에 司譯院正이 되었으나 불행히 이듬해에 요절하였다고 한다.[26] 이것은 예외적인 일일지 모르나 漢學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출세인 것이다. 譯學書의 간행에 관여한 校正官과 書寫官의 題名記를 유심히 보더라도 이 사실은 수긍된다. 漢學書에는 司譯院正이거나 그것을 역임한 사람이 복수로 나타남이 보통인데, 심한 예지만 1795년(정조19) 『重刊老乞大』의 校整官으로 前司譯院正이 洪宅福 등 6명이나 기록되어 있다. 漢學書가 아닌 다른 譯學書에는 겨우 한 사람이 나타날까 말까 할 정도다. 漢學을 특별히 장려하고 우대하는 司譯院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이 책 기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례다.

끝으로 17, 8세기 이후 사실의 이 책 기술, 특히 국어학계에서 자주 이용되는 譯學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字句 하나도 소홀하게 되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다. 譯學書는 이 책(권8) 什物편과 書籍편에 수록되어 있는데, 편명 그대로 什物편에는 司譯院이 소유한 목판본의 冊版,[27] 書籍편에는 목판본과 활자본의 實冊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18세기 극초에 간행된 淸學書의 다음 기록의 일부 자구에 대하여는 불신하는 견해가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

老乞大板 三譯總解板 小兒論板 八歲兒板 (幷廳官李世萬等書 康熙癸未(1703, 숙종29) 令

25) 『經國大典』 권3 禮典 및 권1 吏典의 諸科조, 『通文館志』 권2 勸奬편 科擧조를 참조할 것.
26) 金良洙(1985: 122)에 의한다. 거기에는 主簿가 奉事로 되었으나 奉事는 從八品이므로 主簿의 오자로 생각한다. 그 각주에 의하면 纘門의 손자 益瑞가 1798년(정조22)에 세운 그의 墓碑에 이러한 경력이 나타난다고 한다. 『譯科榜目』에 의하더라도 그는 1710년 增廣試에 漢學으로 壯元이 되고 司譯院正의 자리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27) 『老乞大』의 책판에 대한 주석에서 '時在槐院' (8, 7b) 다시 말하면 현재 槐院 곧 承文院에 있다고 한 것은 원래 司譯院 소유이지만 司譯院에 소장된 다른 책판과는 달리 承文院에 옮겨져 있다는 뜻이다.

淸學官朴昌裕等六人捐財 以活字開刊 藏於該學)(8 什物편, 7~8)

이 기록이 什物편에 있을 뿐 아니라 서명 뒤에 '板'이라 되어 있어 책판임이 밝혀져 있고 그 중의 한 책인 『三譯總解』의 서문에서 '이들 책을 판각하다(剞劂是書), 목수를 모아 책판에 새기다(鳩工鋟梓)'란 구절이 있으므로 이들은 목판본임이 분명하다(成百仁 1999: 128~9).[28] 그러면 위 주석의 '활자로 개간하다(以活字開刊)'란 기사는 결국 신빙하지 못할 자구가 된다. 위에서 당시의 기사에는 자구 하나도 소홀하게 되지 않았다고 한 것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일이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자구를 따져 보면 오히려 이 책 기술의 치밀하고 용의주도함을 알게 된다.

문제의 자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이 『通文館志』의 책판과 서적에 대한 기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활자본의 협주 기사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제1형: 康熙庚戌 以鑄字印行(象院題語板. 8 什物편, 7b)/ 國初 以鑄字印行(訓世評話. 8 書籍편, 8b)/ 康熙庚子 …… 以鑄字印納(通文館志. 8 書籍편, 10a)

제2형: 康熙庚辰 …… 令芸閣鑄字印行(捷解新語板. 8 什物편, 7b)/ 康熙庚戌 …… 令芸閣鑄字印行(內賜老乞大諺解. 8 書籍편, 8b)/ 雍正甲寅 …… 鑄字印納(經世正音. 8 書籍편, 10a)

여기 『象院題語』와 『捷解新語』가 什物편에 수록된 것은 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계속된 주석에 있는 바와 같이 2, 30년 뒤에 복각되어 책판으로 수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通文館志』와 『經書正音』의 경우에만 '印納'이라 한 것은 특정한 역관이 비용을 대어 印行하여 納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두 유형은 '以鑄字印行'과 '鑄字印行'의 차이다. 이 차이가 의미는 같으나 修辭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의미가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는 이미 주조된 활자로써 인행하고 후자는 그 책을 위하여 활자를 새로 주조하여 인행한다는 뜻이다. 鑄字가 전자는 합성어, 후자는 타동사와 목적어의 통사구성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용법은 활자에 관한 우리 先人들의 글에 흔히 나타난다. 저명한 예로 전자는 李奎報의 「新印詳定禮文跋尾(『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에 나오는 '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 후자는 成俔의 『慵齋叢話』(목판본. 권7, 12b)에 나오는 '鑄字之法'에서 본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두 유형이 주석의 자구에서 나뉠 뿐 아니라 실제 책으로도 구분되는 일이다. 제1형은 모두 漢文本이나 제2형은 漢字 이외의 외국 문자나 독특한 한글이 사용된 倭學書와 漢學書다. 漢文本은 芸閣 곧 校書館에 있는 활자로 간행할 수 있으나 제2형의 倭學書나 漢學書는 새로 활자를 주조하여야 간행할 수 있는

28) 滿蒙字로 된 역학서는 활자본이 전혀 없다. 이들 활자본이 있다면, 만몽자의 '活字'는 단어를 단위로 하여야 된다. 활자본의 능률이나 경제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들 淸學書를 활자본이라 하지 못하는 방증인 것이다.

책이다. 日本의 가나〔假名〕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와 한자의 중국어 注音의 독특한 한글은 특별히 활자를 주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사실을 이 책 활자본 주석의 기사에 나온 '以' 자의 있고 없는 차이가 나타내었다고 해석된다.

이어서 활자본의 간행을 '印行'이라 한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印納'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印行, 納本이므로 활자본에 대하여는 印行이란 용어만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판본의 책판에 대하여는 하나의 예외가 없이 '刊板'이라 하였다. 목판본의 간행은 '開刊, 開板, 刊行'이란 용어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문제의 '以活字開刊'을 보면, 전반은 漢文本의 활자본, 후반은 목판본의 간행에 대한 용어가 된다. 묘한 기사인 셈이다. 이에 실책의 조사를 통하여 활자본과 목판본에 절반이 해당되면서 다른 절반이 해당되지 않는 이 구절을 해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그때의 淸學書는 한 책도 전하지 않는다. 약 6, 70여년이 지난 18세기 후반에 이들을 중간한 『重刊淸語老乞大』(1765)를 비롯하여 『重刊三譯總解』(1774), 『重刊小兒論·八歲兒』(1777(영조53))는 전한다.[29] 다행히 『重刊三譯總解』에는 권1 권두에[30] 「重刊三譯總解序」와 함께 원간본의 「三譯總解序」가 있다. 글의 제목은 없으나 版心題가 「三譯總解序」인 그 서문은 '淸語總解'라 하여 『三譯總解』를 비롯한 그때의 모든 淸學書에 관한 것이다. 『重刊三譯總解』에만 이 서문이 있는 것은 1790년(정조14 庚戌)에 쓴 李瀷의 「蒙學三書重刊序」가 이른바 蒙學 3서인 『捷解蒙語』, 『蒙語老乞大』, 『蒙語類解』의 중간에 대한 것이지만 대표로 『捷解蒙語』에만 장철되어 있는 일과 같다. 그런데 「三譯總解序」의 인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 본문이나 중간본 서문과 달리 원래 戊申字로 인쇄된 것을 복각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에서 이른바 淸學總解라 한 『淸語老乞大』를 비롯한 네 책의 책판에 대한 『通文館志』의 주석에 활자본과 목판본에 두루 해당하는 '以活字開刊'이란 어정쩡한 기사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전반은 활자로 된 원간본의 서문, 후반은 목판으로 되어 있는 淸學書의 본문에 대한 기사인 셈이다. 그런데 이 서문이 원간본에서도 『三譯總解』에만 있었다면, 한 책의 활자로 된 서문과 목판인 네 책의 비중을 같이 다룬 기사는 문제라 할 만하다.[31] 그러나 서문 내용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원간본 네 책의 간행에 관한 것이므로 서문

29) 이들 서명은 「重刊三譯總解序」와 『重刊小兒論·八歲兒』의 서문에서 말한 '總解重刊之役'에 의한다. 刊記에는 '改刊'이라 하였는데, 이 『通文館志』 什物편과 書籍편에서는 '新釋'이란 冠稱이 있다. 新釋은 漢學書인 『新釋老乞大』, 『新釋朴通事』에 맞추어서 이들 책이 중간된 사정을 시사하는 것이다. 『重刊淸語老乞大』에는 「淸語老乞大新釋序」도 있으므로 新釋이 더 나을지 모르나 여기서는 「重刊三譯總解序」와 관례에 따라 관칭 '重刊'을 붙인다.

30) 滿蒙文의 譯學書는 左書인 漢文의 서문은 권1, 不分卷 1책일 경우에는 책 본문이 끝난 뒤에 장철된다. 『重刊小兒論』 뒤의 글을 서문이라 한 것은 '余曾弁卷 今又因其請 書此以復之'라고 한 서문 내용에 의하지만 淸學書 장책의 관례도 고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表題가 서문 장철 등에 따라 일반 漢文本과 같이 하여 본문과 어긋나게 된 예가 많다.

31) 여기에 원간본 서문이 원래는 淸學總解의 네 책에 다 장철되어 있었으나 중간하면서 대표로 『三譯總解』에만 남겨놓았을 추측을 제기하여 두고자 한다. 같은 계기로 동시에 인출된 여러 부의 목판본에

과 淸學總解의 비중을 같이 다룬 주석 기사의 균형 감각을 이해할 수도 있다. 요컨대 그 기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심한 결과로 이루어진, 매우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通文館志』에서 활자로 된 漢文本을 '以鑄字印行'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鑄字를 피하고 굳이 活字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서문만 활자로 된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 하면 지나친 천착일까.

이상의 논의로 『通文館志』의 기사는 史料로서 신빙성에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사의 양면성은 대상의 연대와 관련이 있다. 신빙성이 결여된 기사는 임진란 이전을 대상으로 한 것에 보이고, 자구 하나까지 소홀히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큰 기사는 18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책이 적어도 司譯院에 관한 史料로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史料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여기에서 논의된 기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사를 엄격히 검증하고 이용하였으면 하는 일이다.

4. 맺음말

司譯院의 편람서인 『通文館志』는 1720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官署志다. 이 책에 잇따라 편찬 또는 간행된 『奎章閣志』, 『侍講院志』, 『秋官志』, 『太學志』, 『弘文館志』 등 관서지의 남상인 점으로 의의가 크다. 이 책은 처음 간행된 이후로 1888년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나 간행되었다. 불과 170년 미만에 이렇게 자주, 그리고 본문을 간행할 때마다 추가, 보충한 예가 없다. 司譯院의 직제와 外交 관례 등을 참고할 필요에 이유가 있겠으나, 중국과 일본과의 중요한 외교 사항을 연도 단위로 정리한 紀年편을 일정한 시기마다 추가할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빈번한 중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개화기 직전까지 이 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司譯院이 폐지된 이후로는 역사 연구의 필요에서 활판본과 影印本으로 각기 두 차례나 간행되었다. 목적은 같지 않으나 이 책은 간행된 뒤로 계속하여 지금까지 큰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관한 하나의 발문이, 목판본의 광곽에 맞추어서 활자로 다르게 조판되어 장철된 예들이 15세기 후반의 佛書에는 있다. 광곽에 맞추어 책판을 달리하여 여러 벌의 발문을 새기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예가 刊經都監의 諺解書와 다른 불경의 책판으로 1472년(성종3)에 인출된 책에 장철된, 甲寅字로 된 金守溫의 발문(글의 제목은 없으나 版心題는 본문의 서명에 따라 「法語跋」, 「圓覺經跋」로 되어 이름이 다르다)이다. 중간본으로 보면 광곽의 크기가 다른 『三譯總解』와 함께 『小兒論』등의 원간본에도 이 서문이 있었다면 광곽에 맞추어 따로 목판을 새기기보다 활자로 조판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보아 극히 당연하다. 한 책에만 싣기 위한 서문이라면 책판 1장의 판각으로 충분한데, 활자로 조판하여 본문과 다르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목판본의 서문이 활자로 된 사정도 알게 되지만, 『通文館志』 주석 기사의 비중 문제도 없어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근거로 활자로 된 서문이 모든 淸學總解 원간본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원간본이 나타나서 이 추측의 옳고 그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書誌學의 관점으로도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720년에 활자로 원간본이 간행된 뒤에 권8만 기사를 수정, 보완하여 같은 해에 수정본이 간행된 점도 특별한 일이지만, 1778년에 續附本이라 한 목판본을 간행한 뒤로 짧게는 3년만에 기사를 추가하여 중간한 일은 특기할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목판본의 간행에서는 빈번한 중간에서 앞선 간본의 책판을 살려 쓰기 위하여 체재와 기사를 배려하여 손질하였다. 연도에 기사가 잇따라 기록되는 활자본의 체재가 목판본에서는 연도를 독립된 행으로 배치한 체재로 바뀌었다. 왕이 서거하면 묘호에 따라 '今上元年'이 '某大王元年'과 같이 2자가 늘어나는 연도 표기를 고려한 것이다. 1행인 연도의 埋木만으로 왕이 서거한 뒤에도 책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활자본에서 재세한 왕의 즉위 기사인 '今上卽位'가 목판본에서 '今上殿下卽位'로 고쳐진 것도 埋木으로 수정할 때의 글자 숫자를 맞추어서 행한 일이다. 이것은 모두 현재의 책판에 있는 埋木으로 확인된다. 역관계층의 실용적인 성향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은 책 版心의 형식과 함께 우리나라 목판본의 역사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책임에도 그 書誌와 本文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면이 있다. 단적인 예로 원간본이 田川孝三(1953)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그뒤에 이루어진 이 책의 편찬과 이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한 번도 그 책이 조사되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필자의 좁은 소견에 말미암은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다. 이에 우리는 나름대로 현존한 실책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이본 상호간의 관계와 계보를 밝히고, 아울러 극히 일부 기사에 지나지 않지만 史料로서의 검증을 시도하여 본 것이다. 그것은 이 책의 올바른 평가와 이용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한 뜻이다. 그러한 평가와 이용에서 우리 국어학 연구자가 司譯院과 譯學書의 실체에 더욱 접근하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參考文獻

姜信沆(1978),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塔出版社.

金良洙(1985), 「朝鮮後期 譯官家門의 硏究: 金指南·金慶門등 牛峰金氏 家門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32.

金鍾圓(1965), 「通文館志의 編纂과 重刊에 대하여-田川씨의 說에 대한 몇 가지 存疑-」, 『歷史學報』 26.

成百仁(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硏究』, 문학과지성사.

-(1999), 「崔世珍의 生涯와 年譜-그의 誌石 발견을 계기로 하여-」, 『奎章閣』 22.
元永煥(1977), 「朝鮮時代의 司譯院制度」, 『南溪曺佐鎬박사 華甲紀念論叢: 現代史學의 諸問題』.
鄭光(1992), 「『通文館志』의 편찬과 異本의 간행에 대하여-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通文館志』 木板을 중심으로-」, 『德成語文學』 7.
정광 · 윤세영(1998), 『司譯院 譯學書 冊版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今西春秋(1958), 「『漢淸文鑑』 解說」(日文), 『朝鮮學報』 12.
小倉進平(1940), 『增訂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田川孝三(1953), 「『通文館志』의 編纂과 그 重刊에 대하여」(日文), 『朝鮮學報』 4.